#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u> <u>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u>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 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00100018

홈페이지

http://www.8fm.kr/

최초 등록일

2010.01.08

이메일: cko-1215@8fm.kr

최종 등록일

2025.06.18

# [콩불]

# 정보공개서

(주) 8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8푸드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8길 17, 1,2층(관철동)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02-324-8181)

전 화: 02-324-8181 / FAX: 02-324-2597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콩불 외1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종로8길 17, 1,2층(관철동)				
(주)8푸드	법인 설립등기	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アルテニ	2010.08.13		2010.08.13	강경환	02-3	324-8181	02-324-2597	
	법인등록번호 1101	11-442	12930	사업자등록변	호	105-87-4780	06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	로8길 17, 1,2층(관기	철동)		
대표이사	강경환	콩불 외 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경환	02-324-8181	02-324-2597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콩불]이라 합니다)의 내용

가.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콩불	
상 호	콩불 OO점	
상표(서비스표)	245 2454-9.21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없음	

※ 당 가맹사업은 일반형(독립형)과 샵인샵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전에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혐의하여 매장 운영형태 및 영업표지 사용방식을 결정합니다.

#### 나. 브랜드 소개

- 의성 흑마늘 추출물을 먹고 자란 의성 흑마늘콩나물에 돼지고기로 만든 콩불
- 1년 6개월 음식개발과 연구과정, 엄선된 시식평가단의 모니터링을 거친 끝에 탄생한 독창 적인 메뉴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998,738	642,012	356,725	892,703	-119,230	9,012
2023년	895,426	526,426	369,000	1,071,418	3,413	12,274
2024년	982,506	590,950	391,556	1,015,909	8,699	22,556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러시H	[변 ] 시글   청 기·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강경환	대표이사	2010.08~현재	(주)8푸드 대표이사	업무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sup>=</sup> 상근	수(명) 비상근	직원수(명)
2024년 12월 31일	1	0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해당 브랜드 포함).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당브랜드)	(주)8푸드	가맹사업 경영	2009.03.20~현재	콩 불 ( 등 록 번 호 : 20100100018)이라는 영업표 지의 콩나물 불고기 사업
가맹본부	(주)8푸드	가맹사업 경영	2009.03.20~현 재	팔 색 삼 겹 살 ( 등 록 번 호 : 20120100261)이라는 영업표 지의 삽겹살 전문업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	ţ]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콩 <u></u> (상표		1 22 01 11 21	2009.01.16. 출원 2010.06.18 등록	출원 제4120090000958 등록 제4101981320000	강 경환 공 윤옥	2030.06.18 . (2030.06.1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콩불] 가맹사업 현황

1. [콩불] 을 시작한 날: 2009년 03월 20일.

# 2. [콩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두화FS	콩불	강경환	2009.03~2010.08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2-4 JS빌딩 4층
(주)두화에프에	콩불	강경환	2010.08.~2010.12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2-4 JS빌딩 4층
(주)두화에프에 스	콩불	송의헌	2011.1.~2013. 1.1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2-4 JS빌딩 4층
(주)팔색푸드 매니지먼트	콩불	강경환	2013.01.10~2014.04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8길 6 (합정동, 제이에스빌딩4층)
㈜8푸드	콩불	강경환	2014. 04.09~2016.04.05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8길 6 (합정동, 제이에스빌딩4층)
㈜8푸드	콩불	강경환	2016.04.06.~현재	서울시 종로구 종로8길 17, 1,2층(관철동)

#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 H	대분류	소분류		
콩불	한식	콩나물불고기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콩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		2024.12.3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3	23	0	21	21	0	18	18	0
서울	6	6		5	5		3	3	
부산	2	2		2	2		2	2	
대구				1	1		1	1	
인천	1	1		1	1		1	1	
광주	2	2		2	2		1	1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2		2	2		2	2	
강원	1	1		1	1		1	1	
충북									
충남									

전북	1	1	1	1	1	1	
전남	6	6	4	4	4	4	
경북							
경남	2	2	2	2	2	2	
제주							

# 5. 바로 전 3년간 [콩불]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6	0	0	3	1	23
2023	23	1	3	0	1	21
2024	21	0	3	0	2	18

▶ 당사의 [콩불]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2]를 확인하십시오.

# 6. [콩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콩불]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브랜드 포함).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업종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1 1	경오/이급	경험표시	등록번호	H O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8푸드	콩불	20100100018	한식	23/-	21/-	18/-	
(당브랜드)	(T/OT=	등 골	20100100016	연역	<u> </u>	21/-	10/-	
가맹본부	㈜8푸드	팔색삼겹살	20120100261	한식	2/-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콩불]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전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평당 평균	상한	평당 상한	하한	평당 하한	※6개월미 만 영업제외
전체	18	238,974	9,860	1,440,476	41,156	10,375	518	※1곳제외
서울	3	해당없음						5 곳미만
부산	2	해당없음						5 곳미만
대구	1	해당없음						5 곳미만

인천	1	해당없음			5 곳미만
광주	1	해당없음			5 곳미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2	해당없음			5 곳미만
강원	1	해당없음			5 곳미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1	해당없음			5 곳미만
전남	4	해당없음			5 곳미만 ※1곳제외
경북		해당없음			
경남	2	해당없음			5 곳미만
제주		해당없음			_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총 18곳 중 17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가능합니다.

###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	---------

0004	4.0	0.500 61
1 202/	18	1 3 7/98 일
202 <del>4</del>	10	0,120 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콩불]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4]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人口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7 世	十七	기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비공개)	381	381	_		
광고(판촉)	(비공개)		381	381	_		

당사는 팔색삼겹살과 콩불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광고비 및 판촉비현황은 전체 비용으로 당 가맹사업 관련 광고비 및 판촉비현황은 이보다 적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신촌지점	서울시 노고산동 31-6	02-715-007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8푸드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u>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u>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 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 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 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콩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당 가맹사업은 일반형(독립형)과 샵인샵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전에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매장 운영형태를 결정합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일반형]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9,350 ]				
가맹비	6,600	계약 체결 후 2 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약금을 공제
교육비	2,75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샵인샵형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3,300 ]				

가맹비	2,200	계약 체결 후 2 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 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일반형 ]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 2,000 ]			
(현금)보증금	2,000	계약 체결 후 2 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 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 [ 샵인샵형 ]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 500 ]			
(현금)보증금	500	계약 체결 후 2 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丁七	일반형	샵인샵형		
합계	11,350	3,800		
가맹비	6,600	2,200		
교육비	2,750	1,100		
(현금)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5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 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43]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일반형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평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8,900]				66 m <sup>2</sup> 기준
필수설비(정착물)	(주)8푸드외1 개사	15,400	770	개별계약	발주 전 소 요비용 공 제 후 반환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자체시공 또는 <b>협력업체</b>	30,800	1,54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	66 m <sup>2</sup> 기준 3.3㎡ 늘어날
간판/ 사인물	자체시공 또는 <b>협력업체</b>	7,000	-	·공사 시작 3일 전	계약취소	때마다 1,540천원 추가부담
최초 공급 상품 비용	협력업체	2,200	_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테이블/의자	(주)8푸드외 1개사	3,500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발주 전 소 요비용 공 제 후 반환	

# [ 샵인샵형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평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870]				
최초 공급	청려어비	1 070		물품 공급	상품	포장용기
상품 비용	협력업체	1,870	_	1일 이전	미공급시	포함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 고 있습니다.]

[위 표의 3.3m²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점포의설비 정보제공 및 시설과 디자인 관련 기준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대가로 3.3㎡ 기준으로 330천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

# 여야 합니다.]

[샵인샵형의 경우, 필수설비나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대가 등 점포관련 내용에서 일반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본부의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답사 → 본사 담당자와 현장조사 등 시장조사 및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가능 자	-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콩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샵인샵형의 경우, 필수설비나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대가 등 점포관련 내용에서 일반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없음]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주)8푸드	[일반형] 월 매장매출액 X 2.2% [샵인샵형] 110	다음 월 10일	후불로 반환 안됨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ろ)0エロ	V. 9. 광고 및			광고 활동	
판촉분담금	(주)8푸드	판촉 활동 참조			실시 후 반 환되지 않음	
교육훈련비	(주)8푸드	실비청구	개별청구		교육 이후 반환 안됨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다만, 장기운영 매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조정됨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 ) 14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교체·보수비용					내구연수 등을 감 안하여 당사와 협 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ul><li>※29페이지 참조</li><li>※다만, 장기운영</li><li>매장의 경우</li><li>아래와 같이</li><li>조정됨</li></ul>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별도약정에 따름 (약 10~15)	별도약정에 따름	별도약정에 따름	포스업체와협의
지연이자	상대방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 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 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 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시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 없음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 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콩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8푸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 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품목 중 권유 품목 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되는 경우 구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 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상기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약50% 품목을 의미합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 수취여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소콩불			
콩불			
순한콩불			
달달불고기	상기에 기재된 상품・용	1회 위반: 구두 경고	
오삼콩불	역 이외의 상품ㆍ용역을	2회 위반: 2회 이상	
3.8부대찌개	제공은 당사의 승인 없	서면 시정요구	
닭불고기	이 취급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모밀			
당면, 소시지			
사리:떡,우동,치즈,고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제3자	주류 가맹본부와 지 정업체의 공급 품목	거래상대방별로 기재 된 제품은 판매할 수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소콩불	5,000원	공문에 의한 서면 통보	
콩불	6,000원	n,	
순한콩불	6,000원		
달달불고기	6,500원	"	
오삼콩불	7,500원		
3.8부대찌개	7,000원		
닭불고기	7,000원		
모밀	5,000원		
당면, 소시지	2,000원		
사리:떡,우동,치즈,고기	1,000~2,000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콩나물을 곁들인 불고기, 삼겹살, 오	국 H.	
징어요리를 판매하는 업종 또는 이를 이용한 철판요리	콩불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 일반형 ]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첨의 표시지역이 있을 경우
단, 영업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및 병원 등 대규	이을 원칙으로 하며 별첨이
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및 공항, 호텔 등의 시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 [ 샵인샵형 ]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2km 단, 영업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및 병원 등 대규	
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 및 공항, 호텔 등의 시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 ※ 별첨(별지)의 지도표기나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별첨(별지)의 지도표기나 특약사항이 우선합니다.
- ※ 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의 특약으로 영업지역을 협의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영업지역 변경(안)을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변경(안) 작성 →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통지 → 가맹점사업자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경우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 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콩불'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

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콩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3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 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ш. тү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D 100 D 3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sub>D-180</sub> ~ <sub>D-90</sub>
예→④, 아니오→③	D-160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sub>D-180</sub> ~ <sub>D-90</sub>
예→⑤, 아니오→A	D 100 D 3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	
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	
<b>까</b> ?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 D 00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	_
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	
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제1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제1항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9조 제1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9조 제1항
[콩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9조 제1항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9조 제1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 아무리 가 아	되러 케이크 및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2항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소 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9조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3조 5항
계속가맹금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18조1항내지2항
교육의무를 해태 하는 경우	제20조1항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취급품목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2조1항
감독 및 통제 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3조1항
광고· 판촉과 관련하여 "갑"과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내지 26조
원 · 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7조
대금결재와 관련하여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 ㆍ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레90구 1청.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28조1항
품질관리 기준을 1개월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9조1항
영업과 관련하여 "갑"과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 등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32조2항
회계자료 등 보고의무와 출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5조2항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1항내지2항
영업의 상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8조2항
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2조1항,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관련
즉시계약 해지 사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40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제2항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 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 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	

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이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매출감소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	
여야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매출감소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영업지역을 조정하게 됩니 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여부 통시 → 양도의 양구의 가뱃복부의 양구・양]	문의: <b>가맹사업부</b>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승인에 관한 절차는 양도절차에 준용한다. 가맹비는 면제하되 교육은 이수하여야 한다.
대리행사	불가능	=	_	_
업무위탁	불가능	_	_	_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전지역 내에서 귀하가 [콩불]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후 1 년간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당사의 노하우를 이용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콩 나물을 곁들인 불고기, 삼겹살, 오징어 요리를 판매하는 업종 또는 이를 이용 한 철판요리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b>가맹사업부</b> (02-324-8181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콩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시~ 23시	주6일, 월26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부 (02-324-818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없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8회/연	본사 매장관리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8회/연	본사 매장관리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8회/연	본사 매장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8푸드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콩불]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日	교고 서거	투	부담비율	보다 저귀	ы] —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세력 광고 기 8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	"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계약서
① "을"과 "갑"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을"과 "갑"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③ "을"과 "갑"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	
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ᆒᄱᄀ
④ 상호간에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제45조
경우 그 지연 이자는 연 20%로 합니다.	
⑤ "갑" 또는 "갑"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	
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⑥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을"이 제42조(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의 경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일금 오천만( 50,000,000 )원을 "갑"에게 위약	
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ul><li>정보공개서 제공</li><li>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li><li>계약서 제공</li><li>가맹희망자 상담</li></ul>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28(2일)	10p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10p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샵인샵형의 경우, 필수설비나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대가 등 점포관련 내용에서 일반형 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 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 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보면 보면	-) -) 비		괴스러린	
점포환경개선 시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비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 -
ㅇ점포의 시설, 장비,	ㅇ간판교체 비용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가맹점사업자의	ㅇ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 등의	O인테리어 공사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	로부터 3년 이내에	
노후화가 객관적	(장비·집기의 교체	않는 점포환경개선	계약서 등 공사	가맹본부의 책임	
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제외한	: 20%	비용을 증빙할	없는 사유로 계약이	
0위생이나 안전의	실내건축공사에	ㅇ점포의 확장 또는	수았셔潔	종료(계약의 해지	
결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알취의 비용	이전을 수반하는	→ 90일 이내에	영업도 포함되는	
가맹업의 통일상을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	가맹본부 부담액을	경우 가맹본부	
유지하기 어렵거나	통일성과 무관하게	40%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액 중 잔여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기간에 비례하는	
현저한 지장을	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본부와	부담액은 지급하지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간	아니하거나 이미	
	비용은 제외)		별도의 합의가 있는	지급한 경우에는	
			경우 1년의 범위내	환수 가능	
			에서 분할지급 기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		
			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뷔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부 (02-324-818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문의: 가맹사업부 (02-324-8181)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초과한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부분에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한함)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콩불]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콩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 전까지 이수하여 야 함	필수 교육
운영 교육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 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제품 교육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 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콩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 교육	7일	2,750	최초 계약 시 이수
운영 교육	개별 협의	실비청구	추정금액
특별 교육	개별 협의	실비청구	추정금액

### [샵인샵형]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 교육	2일	1,100	최초 계약 시 이수
운영 교육	개별 협의	실비청구	추정금액
특별 교육	개별 협의	실비청구	추정금액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0조에 따라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 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0조에 따라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_	-	_

<sup>※</sup>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OO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2022, 2023, 2024년 재무현황

## [별첨]

## 물품 상세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샵인샵형의 경우, 필수설비나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대가 등 점포관련 내용에서 일반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별첨]

# <u>원·부재료공급내</u>역